

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1108
----------	---------

제안일자 : 2020. 03. 06
제안자 : 도시계획관리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서울공공주택에 해당하는 원룸형 임대주택의 공급주체를 상위법에서 규정한 '공공주택사업자'로 확대하고, 이에 관련한 자구를 정리하고자 함.

2. 수정 주요내용

- 서울공공주택에 해당하는 원룸형 임대주택의 공급주체를 '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급하는 주택'으로 함(안 제2조제1호마목).

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

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2조제1호 중 ““서울공공주택”이란 서울특별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에서 공급하는 다음”을 ““서울공공주택”이란 다음”으로 하고,
같은 조 같은 호 다목 중 “시에서”를 “서울특별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에서”로 하며,
같은 조 같은 호 마목 중 “시 또는 서울주택도시공사”를 “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”로 한다.

수정안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“서울공공주택”이란 서울특별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에서 공급하는 다음 각 목의 주택을 말한다.</p> <p>가. ~ 나. (생략)</p> <p>다. 시에서 전월세 세입자의 전세보증금 일부를 지원하고 장기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임대주택(이하 “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”이라 한다)</p> <p>라. (생략)</p> <p>마. 「주택법 시행령」 제10조제1항 제1호에 따른 원룸형 주택 중 시 또는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목적으로 건설 또는 매입하는 주택(이하 “원룸형 임대주택”이라 한다)</p> <p>바. (생략)</p>	<p>제2조(정의)(현행과 같음)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가. ~ 나. (현행과 같음)</p> <p>다. (현행과 같음)</p> <p>라. (현행과 같음)</p> <p>마. ----- ----- 시, 서울주택도시공사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-----</p> <p>바. (현행과 같음)</p>	<p>제2조(정의)(현행과 같음).</p> <p>1. “서울공공주택”이란 다음 ----- -----.</p> <p>가. ~ 나. (현행과 같음)</p> <p>다. 서울특별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에서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라. (현행과 같음)</p> <p>마. ----- ----- 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-----</p> <p>바. (현행과 같음)</p>

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본문 중 “서울공공주택”이란 서울특별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에서 공급하는 다음”을 ““서울공공주택”이란 다음”으로 하고, 같은 조 같은 호 다목 중 “시에서”를 “서울특별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에서”로 하며, 같은 조 같은 호 마목 중 “시 또는 서울주택도시공사”를 “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”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수 정 안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“<u>서울공공주택</u>”이란 <u>서울특별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에서 공급하는</u> 다음 각 목의 주택을 말한다.</p> <p>가. ~ 나. (생략)</p> <p>다. <u>시에서 전월세</u> 세입자의 전세보증금 일부를 지원하고 장기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임대주택(이하 “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”이라 한다)</p> <p>라. (생략)</p> <p>마. 「주택법 시행령」 제10조제1항 제1호에 따른 원룸형 주택 중 <u>시 또는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공공 임대주택 공급을 목적으로 건설 또는 매입하는 주택(이하 “원룸형 임대주택”이라 한다)</u></p> <p>바. (생략)</p>	<p>제2조(정의)(현행과 같음).</p> <p>1. “<u>서울공공주택</u>”이란 다음 ----- -----.</p> <p>가. ~ 나. (현행과 같음)</p> <p>다. <u>서울특별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에서</u> ----- ----- -----</p> <p>라. (현행과 같음)</p> <p>마. ----- ----- <u>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</u>----- -----</p> <p>바. (현행과 같음)</p>